

산업 안전 · 보건지도사 업무의 활성화 방안

박 무 일 우리 협회 교수, 건설안전기술사

1. 문제의 제기

안전 · 위생 지도사가 '96년도 제1회에 169명이 배출되었으나 그간 업무활동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1회 배출후 후속적인 배출이 되고 있지 않아 현행지도사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으며,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

1) 현 지도사 제도의 도입 배경

- 안전관리자간의 선임기준 완화 등으로부터 자율 안전관리에 대처하고
-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등 영세사업장의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이들 사업장을 지원하며
- 이를 위하여 일본의 안전 · 위생 컨설턴트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하게 됨.

2) 현 지도사 제도의 문제점

-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으로부터 자율 안전관리에 대처하고
- 영세사업장도 대상이 되고 있음.

즉 이 제도는 자율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우리나라 안전수준으로 볼 때 법적 뒷받침이 없는 안전활동은 아직 시기상조이며,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더욱 심한 형편이므로 이로 인하여 지도사의 업무와 보수가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음

3) 제도의 존치 및 활성화 불가피

지도사는 이미 제도화되었고 96년도에 1차 선발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존폐 문제는 거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, 이 제도에 의한 전문요원을 잘 활용하면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될 수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이 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,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요망됨

-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면
 - 법정 업무중 구체적인 업무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며
 - 이에 상응하는 인력소요 및 경력수준을 판단 하여
 - 이에 따른 응시자격, 시험 등 선발 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

2. 현행 지도사의 직무

(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2)

1) 산업안전지도사

-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· 지도
- 유해 · 위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· 지도
- 공정상의 안전 및 유해 · 위험 방지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
-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
-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

2) 산업위생 지도사

-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
-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

-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·연구
 -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의 작성
 -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
 - 3) 위와 같이 법상직무는 있으나 시행령, 시행규칙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를 도출해 보면,
 - 사업주 요청이 있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대규모사업장은 자체능력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어 이 때는 지도사의 질적수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음
 - 우리나라 사업장의 정서상 타인에게 업무위축 또는 의뢰하는 것을 아작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
 - 영세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타인 또는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자율안전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음
 - 지도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즉,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
- 이와 같은 제 요인들 때문에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영역의 구체화와 동시에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행정지도가 요망된다.

3. 일본의 안전·위생 컨설턴트 제도

우리나라 지도사 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의 컨설턴트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,

1) 특징

사업주와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가 구체화 되어 있고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활성화 되었음

※ 안전관리사, 안전관리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2) 업무 내용

- 사업장의 안전·보건진단 및 개선지도

-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 기준(설계기준, 운전기준, 검사기준 등)의 작성에 대한 지도
- 공장을 신설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 또는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원재료를 채택하는 경우의 안전·보건측면에서의 지도
- 안전·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
- 안전관리규정, 안전작업표준 작성의 지도
- 안전·보건에 관한 평가, 조사 및 연구(재해 발생시 포함)
- 기타 안전·보건에 대한 컨설턴트 활동
 - 특히 산업안전위생법 제78조1 “도부현 노동국장”이 사업장에 안전·보건개선계획작성 명령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턴트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작성 및 의견을 들도록 정하여져 있음

3) 일본에서 컨설턴트가 활성화되는 근본요인 ('72년 공포)

-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라인에 제공
-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지원
- 민간 유경험자를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
- 능력을 공증하기 위하여 국가고시 및 노동장관의 등록제도를 둠
-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수를 얻으며 자유업으로 활동
- 산업안전위생법 제87조에 따라 공식법인을 설립, 회원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
- 현재 회원에 가입된 안전·위생 컨설턴트 1,800여명(안전:700여명, 위생:1,100여명)
- ※ 안전·보건단체의 안전·보건관리사는 기업에 고용되어 당해사업장 및 계열사의 안전·

보건지도 실시

- ※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사 업무가 활성화 된다면 일본의 1/2정도 이상의 인력요소가 예상됨

4. 지도사 업무의 구체화 방안

1)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, 지도사를 중심으로 활용 계획서의 4. 재래형 건설재해근절(p62~72)

-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작성, 심사 및 확인제도 개선
 - 안전작업 절차서 작성 및 이행지도
 - 가설공사 안전시설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
 - 종합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
 -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수준 향상
- 계획서의 5.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집중지원 (p73~76)

-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개선 및 시설개선 지원
 - 중소 · 영세사업장 무료 기술상담 · 지도
- 계획서의 6.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(p91~92)

- 산업안전 · 위생지도사 육성
 - 산업안전 · 위생관련 각종 진단, 측정, 교육, 검사, 심사 등의 인력 기준에 포함
- 안전보건 건설팅의 활성화 (p97)
 - 재해예방사업 참여확대,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정요건 사업장 안전 · 보건관련지원 및 지도 사업에 적극 참여 활용

2) 안전 · 보건 관련기관의 인력기준에 지도사를 필수요원으로 포함시켜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, 개선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지도사에게 적극 이양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안전보건진단기관, 안전보건교육기관, 안전 · 보건관리대행,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,

초일류 평가기관 등

- 정부 및 법정기관 전문요원으로 일정수 확보
- 기업체에 보유시 자율안정의 인정 등으로 장려하고

3) 건설업의 경우 종합안전관리자제도 도입, 안전작업절차서 작성, 이행지도 및 가설공사 안전시설 설계도서 작성의 의무화하며

4)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개선 및 시설개선지원, 중소 · 영세사업장 무료 기술상담 · 지도 시 국고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

5) 노동사무소별로 지도사를 위촉하여 중대 재해조사, 산업재해조사 및 분석 등 안전시책수립, 합동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초자료정비(특히 재해분석) 및 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.

6) 지도사 업무가 제기능을 할 때까지 기술사법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하고, 시설 및 장비 확보시 재해예방 기금의 용자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으로 육성한다.

- 무엇보다 정부 ·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본제도는 활성화 될 수 있다.
- 현재 노동부 공무원 및 산업안전공단 직원들도 지도사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시험제도도 보완이 요망됨
- 응시수준은 현행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의 고급기술자급으로 하여 경력으로 제한을 하여야 함

7) 업무가 활성화 되었을 때 안전관리자 등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의 진로가 확보되어 우수인력의 유치 등 안전분야의 커다란 발전이 기대됨

※ 이 글은 지난 7월 2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“산업 안전 · 위생지도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”에서 발표된 것임